

3) 휴직사유 소멸자의 복직절차

- 가) 발령기준일: 복직원(휴직사유 소멸시 30일 이내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 발령조치 (제대일 · 복직원 제출일을 기준한 소급발령 불가)
- 나) 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복직발령 전일까지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의 휴직기간으로 봄
- 다)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직무에 복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라)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 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권면직 시킬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제2호)

라. 결원보충(「국가공무원법」제43조, 「공무원임용령」 제42조)

1) 의의

- 가) 휴직 · 파견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
- 나) 기관별 정원관리원칙(조직관계법령상)의 예외 인정

2) 인정구분

- 가) 질병, 군복무, 법정의무수행, 고용, 해외유학, 연구 · 교육기관 연수, 육아, 가족돌봄, 동반, 교원 노조전임자, 자율연수 휴직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휴직일부터 결원보충 인정(「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2항)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 가능)
- 나) 이 경우 별도의 결원보충 승인은 필요 없음

3) 별도정원의 소멸: 휴직자의 복귀 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 별도정원이 소멸됨 ※ 휴직자가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그 직급(위)에 결원이 없더라도 휴직자는 반드시 복직 시켜야 함. 이 경우 현원이 정원보다 초과된 때는 과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된 현원에 상당하는 숫자만큼을 별도정원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 별도정원은 당해직급(위)의 정원이 증가되거나 또 다른 휴직자의 발생, 면직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당해직급(위)의 정원과 현원이 최초로 같아질 때 별도정원이 소멸됨

마. 휴직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1) 임용권자는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 제12호)의 허가 시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 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 2)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을 허가하는 해외 유학휴직, 고용휴직, 국내 연수휴직, 동반휴직 등에 대하여 최소한 휴직기간(예: ○개월 이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이를 이유로 하여 단기간의 휴직(예: 6개월간의 고용휴직 등)을 신청하였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여부 또는 휴직목적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